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정희 의원 외 17명

2. 제안이유

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에 대한 공동전기료 및 승강기 운행 부대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승강기 설치·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인구유입에 도움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의 변경(안 제31조)

- 현행 :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개정 :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

나. 지원항목의 변경(안 제31조, 제32조)

- 현행 :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
- 개정 :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부대비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「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1. 18. ~ 11. 23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영구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운영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관내 위치한 황상3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구성이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, 공실의 대부분이 고층(5~6층)에 있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,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